

이 재 호 (당시 25세)

집안을 돕기 위해 서울로 상경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동지는 88년 1월 인천 협신사에 입사한다. 89년 10월 29일 인천주안 4동에서 노동조합 관련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둔기에 턱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동지는 그 동안 89년 2월 노동조합 결성 이후 계속되어온 무자비한 노동조합 탄압 속에서 파괴된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다 끊임없는 노동조합 탄압의 협박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치사 사건으로 넘기려 했으나, 이는 공안정국 아래서 자행되어온 정부기관의 불법적 연행과 테러, 구속, 수배, 미행 등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인권유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무법천지성을 반증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박 태 순 (당시 26세)

1966년 9월 태어난 박태순 동지는 92년 8월 29일 부천시 소재 골판지 생산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흥동 소재 친형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구로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되었다. 동지는 85년 한신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87년부터 노동운동을 하다가 89년 5월 20일 구속되어 1년 6개월간 복역을 하였고, 90년 11월 13일 부산교도소 출소 후 계속 노동운동을 하던 중 병무청 영장수취 거부로 주민등록 말소로 기무사령부의 추적을 받은 바 있다. 행방불명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 경과 보고

1.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개정 과정

- △ 1988년 유가협, 135일간의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투쟁 (NCC)
- △ 1998년~1999년 유가협, 4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 투쟁 전개
- △ 2000년 1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정 / 민주화 명예회복법 제정
- △ 2000년 7월 10일 시행령 공포
- △ 2000년 10월 12일 위원 국회 동의
- △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이 9인의 위원을 임명, 위원회 정식 출범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과정

■ 진정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

△ 진정접수('01년 12월 31일까지) : 80건

- 피진정 기관별 : 국정원 10, 경찰 26, 군 30, 기타 14
- 발생 시기별 : 70년대 15, 80년대 51, 90년대 14

△ 조사개시 결정 : 83건

- 접수된 진정사건 중 2건은 진정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 78건 조사 결정
- 「삼청교육대」, 「인혁당」사건 등 시대별 상징적 사건 직권조사 결정(5건)

■ 조사 상황 (2002년 8월 26일 현재)

△ 조사종결 : 30건 (36%) ※ 기각 20, 인정 6, 취하 1, 불능 3

구분	계	유가협 관련	개별·직권관련
계	30	12	18
조사1과	4	최종길	김제강, 이수영, 김석조
조사2과	11	배종수, 고정희, 김준배, 오범근	박현강, 심재환, 우수열, 정인택, 장중훈, 최봉대, 박인순
조사3과	10	임기윤, 한희철, 김용권 송중호, 김영환, 우인수, 노철승	이재근, 김소진, 이진래
특조과	5		신영수, 김진홍, 박영두, 탁은주, 심오석

※ 범례 : 취하, 기각, 인용, 불능

△ 조사 중 : 53건(64%) ※ 조사보고 26, 보강조사 중 12건, 미보고 15건

□ 조사보고 완료 (26건)

구분	계	유가협 관련	개별·직권관련
계	26	11	15
조사 1과	1		양상석
조사 2과	9	문승필, 박동학, 문영수, 정법영, 김용갑, 이덕인	이승룡, 박태조, 김상원
조사 3과	9	최우혁, 한영현, 박성은, 박필호, 이이동	정도준, 임용준, 이창돈, 정연관
특조과	7		박태순, 최석기, 박용서, 변형만, 김용성, 손윤규, 권두영

□ 보강조사 중 (12건)

구분	계	유가협 관련	개별·직권관련
계	12	7	5
조사 1과	1		정은복
조사 2과	4	신호수, 정경식, 문용섭, 우종원	
조사 3과	5	이윤성, 최은순, 허원근	정성희, 남현진
특조과	2		안치웅, 노진수

□ 미보고 (15건)

구분	계	유가협 관련	개별·직권관련
계	15	9	6
조사 1과	6	이철규, 박창수, 이내창, 장준하	김창수, 장석구
조사 2과	4	이재호	김성수, 이재문, 임태남
조사 3과	4	박종근, 박상구, 김두황, 이승삼	
특조과	1		전정배

■ 위원회 임기

- △ 조사 기한 : 2002년 9월 16일
- △ 위원 임기 : 2000년 10월 17일 ~ 2002년 10월 16일 (임기 2년)
- △ 대통령 보고 : 2002년 10월 16일 (조사종료 후 1개월 내)
- △ 보고서 발간 : 2003년 3월 16일 (대통령 보고 후 5개월 이내)

3.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단체 및 유가족 활동 내용

■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투쟁

■ 의문사 진상규명 홍보와 법개정 - 서울역 앞 캠페인/의문사 컨서트

■ 의문사 법개정 활동 - 조사권한 강화 및 기간 연장 추진

- △ 2001년 6월 기간 연장 및 과태료부과권만 확보
- △ 2002년 2월 기간 연장 및 진상규명불능 판단 조항 신설에 그침

■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전면적 지원 및 비판 활동

- △ 2001년 9월-12월 위원회 쇄신 촉구, 위원회 1주일 농성투쟁, 양승규위원장 퇴진 투쟁 등

■ 진상규명 비협조 기관 및 관련인 항의투쟁

- △ 박영두 사건 반성하지 않는 살해자 김의식(김천지원), 김명검(청송교도소) 항의 투쟁
- △ 김준배 사건 은폐조작 정윤기 영월지청장 항의 투쟁
- △ 김준배 폭력살인 경찰청, 은폐조작 지휘책임 검찰청 항의 투쟁
- △ 녹화사업, 삼척교육대 사건 진상규명 비협조 전두환 규탄 투쟁
- △ 녹화사업, 마파람, 921민간인 사찰 기무사 규탄 항의 투쟁
- △ 장준하, 박창수, 이내창 등 8건의 의문사 진상규명 비협조 국정원 항의투쟁
- △ 노동자 문용섭 의문사 은폐조작 명동성(인천지검) 규탄 및 파면요구 투쟁
- △ 군의문사 은폐조작 국방부 항의 규탄 및 진상규명요구 투쟁

첨부자료 2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명서 모음

- 2001년 12월부터 -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전면혁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001년 12월 21일

의문사 유가족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진상규명위의 전면혁신'을 요구하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 6일째인 지난 12월 2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3인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사퇴하였다. 그 직후 이를 받아 7인의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놓았다. 이 의견서를 통해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의 올바른 재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밝혔다. 첫째,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법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활동기조를 바꾸기 위해 상임단을 재편한다. 셋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태도는 그간의 모습과 비교하여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지난 84년 녹화사업의 진상규명 투쟁으로 시작된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이 유가족 부모님들의 422일간의 농성투쟁으로

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17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간 속에 품어온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모습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처절한 고통과 실망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피맺힌 성토에 대해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분들의 호소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무사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와 방해, 조사권한의 미비로 인해, 소속 조사관들이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에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도 위원회의 상층간부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조사만을 되뇌이며, 법개정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그리고 세간에 잘 알려진 일부 사건들만을 정치적으로 포장하면서, 나머지 의문사 사건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지으려는 안일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의 태도에 계승연대와 유가족들은 대국민호소를 통해 가해기관의 비협조와 방해를 정면 돌파할 것과 한계가 뚜렷한 의문사법의 개정을 위원회

가 주도해주시기를 수차 강력히 권고해왔으며 미진한 조
사상황에서의 조기종결을 반대해왔다.

20여년 동안 피눈물나는 투쟁의 세월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이제 와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들이 종결되어, 오히려 가해기관들에게
면죄부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유가족
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의문사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은 결코 유가족과 위원회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민주
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온갖 야만적인 방식을 동원하였
던 과거 정권의 죄악을 역사 앞에 철저히 고발하여 다
시는 그러한 야만의 역사가 이 땅위에 되풀이되지 않
게 하기 위한 엄숙한 작업이며 온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러한 엄숙한 역사 앞의
책무를 망각하고, 진정된 80여건의 의문사 중 극히
일부인 몇 건의 의문사를 해결하였다는 것에 만족하면
서 다른 의문의 죽음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사건
을 종결짓는다면 이는 실로 위원회가 씻을 수 없는 과
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당면 의문사 진상규명은 김대중 정권이 대표
적 개혁조처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나, 현재와 같
은 상황은 오히려 과거청산이 아니라 의문사들을 청산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유가
족들을 다시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달
래주기 위해서,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청
산이라는 역사적 소임에 충실한 위원회를 바라는 마음
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와 위원회에 요구한다.

1.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전면혁신
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며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정부와 위원회는 유가족의 호소에 화답하
라.

2. 물론 의문사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협조하지 않은 가해기관, 정부의 의지 결여에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3. 위원회는 현재의 위원회 파행을 불러온 미흡
한 조사 및 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일
소하고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포함한 전면적인 체
제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의 한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법개정투쟁에 나
설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법개정에 나서라

4. 이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바를 국민에게 낱알이 공개하고, 근본적인 혁신방안
을 강구하라

2001년 12월 21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
합·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새사회연대·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민주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참여연대·불
교인권위 등 44개 사회시민단체·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
천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부산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
승광주전남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구경북연대)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권오
현, 남상현, 오종렬, 박원순, 홍근수, 허영춘, 신정학, 김
용문, 박정관, 김두원, 박희순)

[논평]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무사의 녹화사업과
민간인 사찰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 2002년 2월 22일

최근 윤석양 이병의 사찰 폭로 이후에도 기무사가
민간인 노동운동가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
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92년 8월 실종된
뒤 의문사한 것으로 밝혀진 노동운동가 박태순 씨의 죽
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증언이 나왔
음에도 기무사는 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조사
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는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기무사의
역할은 군부내의 쿠데타를 방지하는 등의 군 관련 정

보수집과 군 수사업무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무사의 전
신인 보안사는 직접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정권
을 장악했는가 하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란 이름으
로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징집하여 온갖 고문 끝에 프
락치 공작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기무사는 고문에 굴복한 학생들에게 동료들의 동정
을 탐문해 보고하도록 강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
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 자살한 것으로 은
폐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86년 노동운동가 김지선씨에 대한 성추행 사
건, 89년 학생운동가 김정환 씨에 대한 프락치 강요
생매장 기도 사건 등의 민간인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통해 군부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더러운 작업들을 자
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90년 윤석양 이병이 민주인
사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으로 인
해 전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며, 민주진영에서는 기무사
의 본질이 정치공작에 군을 이용하는 폭압기구라고 보
고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민간인
사찰을 중지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고 했으나 이
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녹
화사업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 계속적인 공작을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그동안 자신들의 과거
죄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양 이
병의 양심선언 이후 민간인사찰을 더 이상 하지 않겠
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한번 국민을 기
만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기무사는 지금

도 강제징집, 녹화사업과 관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은폐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박태순씨 사찰과 관련해서도 기무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발뺌하고 있어 유가족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민간인 사찰과 같은 기무사의 통제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무기력하지 않다. 만약 기무사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를 결코 묵인하거나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역시도 박태순씨의 죽음을 비롯한 기무사와 관련된 의문의 죽음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국회는 이창복의원 외 6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을 2월 회기에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을 방기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2년 2월 22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조사권한의 강화없이 조사기간 연장은 빈껍데기! - 국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 조사기간 연장만 우선 처리

- 2002년 2월 28일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박헌기 위원장 외)안으로 '기간 연장'과 '진상규명불능 결정 신설'만을 처리하고, 조사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창복의원 발의안은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지난 2월 8일 이창복의원 외 66인의 발의로 제출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단순히 조사기간을 몇 개월 연장시켜서는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이 봉착한 난관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료협조권 강화, 계좌추적조회 및 통신내역 조회권 등 조사권한 강화 등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가족 및 단체의 주장일 뿐 아니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언론 등에서도 계속 제기해 온 내용들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 개정안에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 법무부 및 보상심의회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아예 법안상정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유가족들의 반발과 연일 제기되는 여론에 떠밀려 안건상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창복의원에게 위헌시비가 있는 공소시효 중지와 같은 조항을 정리한 수정제안을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제출된 수정제안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위와 같이

졸속처리를 한 것이다.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 작업은 법적인 권한의 부재로 인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고 있고, 그나마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예정된 조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거나 함부로 기각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적 조치로는 이 법의 제정취지인 의문사진상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는 조사권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창복의원의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하여 의문사 위원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 문제나 강제구인 및 압수수색, 통화감청 등 영장이 필요한 수사권에 대하여 법적 현실론을 인정하고 철회한 수정안이 제출된 만큼 법사위는 신속히 법안심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비협조를 즉각 시정하고, 법개정에 대한 반대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간 법무부는 온갖 법리를 과대하게 들어가며 발의된 개정안 일체를 반대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밝힌 '박영두 의문사사건'의 피진정기관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자신들의 과거 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거듭나야 할 기관이지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에 대해 운운할 처지가 못된다. 만일 법무부가 이와 같은 태도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개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맺힌 한을 풀고자 하는 개인적인 차원만은 결코 아니다. 죽음의 진실을 밝힘으로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잡아 참된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역사적인 작업이다.

우리는 유가족 및 제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 법무부 등 법개정 반대하는 기관에의 항의, 진상규명과정에서 드러난 관계기관의 비협조사태에 대한 국민호소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창복대표 발의)을 조속히 심의하라!

1. 법무부는 박영두 사건에서 밝혀진 인권유린을 사죄하고, 즉각 의문사특별법 개정반대를 중단하라!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즉각 의문사특별법개정에 협조하라!

1. 대통령은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혁신하라!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의 현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개정에 적극 나서라!

2002년 2월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쇄신을 위한 / 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

[최종길 간첩공작살해에 대한 공동성명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없다
반성하지 않는 최종길 간첩공작 살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 2002년 5월 29일

○ 공소시효 중지 -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자들!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故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의 간첩공작에 의해 살해
 당했다. 그리고 형법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 5국
 공작과(10과) 수사관 차철권, 김상원은 폭행·가혹행
 위와 상해치사범으로, 변영철은 폭행·가혹행위범으
 로, 그리고 사건발생이후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공문서
 들을 작성한 조일제(차장보), 안경상(국장), 장송록
 (단장)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범으로 드러났
 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차철권은
 지금도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
 차 부인하고 있다. 김상원은 88년 검찰재조사이후 미
 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
 다. 그 외 관련자들도 발뺌하기에 바쁘다. 유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하면 화해하겠
 다고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반인도적 국가범죄, 가공할 만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둠에 묻혔던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화

해와 재발방지를 도모한다는 의문사진상규명의 본 취
 지를 살리려면 즉각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
 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 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한계 뒤에 숨겨진 배후
 세력-불완전한 진상규명!

이번에도 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한계는 또다시 드러
 났다. 미국으로 도피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상
 원의 협조를 강제할 어떤 권한도 없었으며, 그리고
 차철권 등의 거짓증언을 처벌할 어떤 권한도 없는 상
 황에서 진실을 100% 밝힐 수는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정보부의 김치열차장과 이후락부장
 은 사후 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진실을 은폐한
 책임을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최대한 이
 득을 보았고, 관행상 직보를 받았음이 분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 또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던 88년 재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했다. 만일 당
 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진상규명할 의지가 지금
 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절반만이라도 있었다면 지
 금과 같은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국정원은 과거 공개사죄하고 모든 의문사 진
 상규명 책임져야

이제 국정원은 국민앞에 공개사죄하여야 한다. 비록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또다시 국
 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국민
 들은 모두 같은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중앙정보부 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가정보원에도

그대로 관통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
 죄에 대하여 겸허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
 여야 할 것이다. 단지 고문했던 행위나 은폐행위에 대
 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서 간첩공작 살해
 하였던 전모에 대하여 전면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여타의 의문사사건에 대한 철저
 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에서 조사중인 64건 중 대표적인 의문사사건
 인 장준하, 박창수, 이내창, 이철규 등 상당수의 사건
 들이 모두 바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관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민주화운동
 탄압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공작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 하에 조사중인 대부분의 공안사건의
 자료도 국정원에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온존하여 있다
 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의문사진상규명의 성패는 국
 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내놓고 진실을 밝혀
 려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처럼 내규를 이유로 관련정보원
 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핵심자료를 차일피일 미루
 는 식으로 비협조적이라면 국정원은 결코 과거의 반민
 주적 반인권적 폭압기구였던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비난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
 다.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
 제하라.

- 민주인사 최종길간첩공작살해 국정원은 공개사
 죄하라.

- 국정원은 장준하, 박창수사건 등 의문사진상규
 명 적극 협조하라.

- 최종길간첩공작살해 정권미화하는 박정희기념
 관건립 즉각 중단하라!

2002년 5월 29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최종길고문치사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위원회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

[기자회견문]
민주열사 김준배에 대한 경찰의 폭력살인과
검찰의 은폐조작을 규탄한다.
 - 2002년 7월 10일

1997년 9월 15일, 온가족이 모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그 날 밤 비명횡사한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러났다.

2002년 7월 9일 오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는 지난 2년여간 조사하던 제5기 한총련 투
 쟁국장 김준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과를
 공표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 사건의 진상은 이
 러하다.

지난 1997년 경찰은 특진까지 걸고, 한총련에 대

한 마녀사냥을 벌였다. 그리고 특진에 혈안이 된 전남 경찰청 도철호 경장은 돈으로 김준배의 후배들을 매수하였고, 매수된 후배들에 의해 김준배는 추석을 그들이 제공한 은신처에서 지내게 된다. 1997년 9월 15일 저녁, 경찰은 광주 청암아파트 13층에 은신한 수배자 김준배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어떠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검거작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쓰러져 있는 김준배를 경찰관이 몽둥이와 발길질로 구타하여 사망함으로 검거작전은 끝이 났다. 그리고 사망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 정운기(현 영월지청장)는 당시 목격자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고, 유가족과 대책위 등의 경찰 구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무시하고, 당시 김준배가 떨어진 높이가 3-4층 정도라 확인되었음에도 10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발표함으로써 추락사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였다.

지난 5년 간 의문사로 남은 김준배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유가족과 관련단체의 피눈물나는 투쟁이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데에는 조사관의 헌신으로만은 불가능하다. 수많은 죄절을 겪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의문사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그에 합당한 권한과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위원회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도 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진상규명위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기관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김준배 열사가 한총련 관련 수배자임으로 인해, 김준배 열사의 활동을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현재도 진행중인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및 검거 등의 국가 행위와의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들의 소신 있는 판단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김준배에 구타를 가한 이영진 경찰관 1인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당시 무리한 검거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 및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정운기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은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김준배 의문사 사건의 사망책임 및 은폐책임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진실에 있어 꼬리만을 자를 것이 아니라, 의문사를 발생케 한 몸통과 이런 의문사를 의문사로 만든 은폐와 조작의 주범에 있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후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 요구한다.

고발되지 않았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경찰과 검찰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자체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물릴 사람을 책임을 물리는 등의 자기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는 검거작전의 수뇌부 및 이영진에 대한 문책이 진행되어야 하고, 역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정운기 검사에 대해서도 그 직무유기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게는 이런 사건이 의문사로 남게 된 원인에 대해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한총련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끝은 아니다.

유가족과 관련단체는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용서를 구한 사람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역사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02년 7월 10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 故 김준배 열사 부친 김현국 / 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

[성명서]

전두환은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영정 앞에서 사죄하라!!!

- 2002년 8월 16일

전두환 전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강제징집·녹화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요구에 대해 출석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답변서를 통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국가 시책이라 표현하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오히려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지난 문민정권에 의해 전두환이 집권하기 위해 자행한 12·12 사태가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로 판명되어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그들의 머리 속에는 5공의 헌법과 법률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생명에 대한 존엄성,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만이 합법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전두환은 왜 출두하여야 하며 왜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자

1. 위원회에서 조사중인 6인(이윤성 등)은 불법적인 강제징집과 그 이후 보안사의 녹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프락치공작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이 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미 한희철 사건의 진상규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 모두 강제징집 당하지 않았다면, 보안대에서 모진 고문 속에 프락치강요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힘에 있어 강제 징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전모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은 다시는 이 사회에 이러한 불행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과거 5공화국 군부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전모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군부정권의 하수인들이 우연적인 실수로 발생한 죽음이 아니라 군부정권의 통치차원의 구조적 탄압 하에서 자행된 필연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녹화사업은 82년 9월부터 84년 11월까지 시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82년 9월 녹화사업을 위해 신설한 보안사 3처 5과(심사과)의 심사과장으로 서의남이 발령 받아 왔을 때 이미 녹화사업에 관한 기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3처장인 최경조는 녹화사업을 입안하게 된 것은 청와대 회식자리에서 전두환에게 심한 질책과 지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5공화국 군부정권의 분위기에서는 위와 같은 질책과 지적은 거의 절대적 명령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5공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임재문의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녹화사업의 입안 및 실시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두환씨의 조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를 총으로 진압하고 들어선 무소불위의 5공화국 군부정권은 이후 군을 수단으로 정권유지를 해왔던 것이다.

3.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두환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은 국회동의를 거친 그 어떤 법도 없이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안기부, 보안사 등이 대책회의 등을 통해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권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립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보안사의 프락치공작을 통해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고 간첩, 좌경공공으로 조작하여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씨는 녹화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출두하여 어떠한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는지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조사하는 적법한 출두요구 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적법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특히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은 광주를 짓밟으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위반 등의 이유로 무림, 야학연합회 사건들을 조작하고 이들 관련자들 태반을 군으로 강제징집 시켜왔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였고, 정당한 통치행위인가? 이것이 적법한 행위라면 전두환은 물론 당시 계엄합수부장이었던 노태우씨, 그리고 직접 이들을 구속하고 강제징집시킨 이학봉수사단장 또한 당연히 의문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정화란 명목으로 자행하였던 삼청교육대사건은 군부정권의 통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반민주 반인권 행위로 그 위법성이 인정된 바 있는 데, 강제징집 또한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5. 더욱 가공할 것은 80년 말 계엄이 풀린 이후 다시 확산되는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지도휴학, 권고휴학 등을 통해 강제징집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도 모자라 81년 12월 5일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징집 제외자도 우선 징집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형식적 징집 절차도 무시하고 경찰서에 훈련소로 곧장 입대시키는 가공할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무려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운성 등 병역 면제자까지 죽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피해로 인해 아직도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헌법정신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떠들 수 있는가?

6. 기무사가 82년 녹화사업을 입안하게 된 경위는 군내 좌경공공세력의 준동이 있어 구속시킨 사례등을 들고 있다고 하나, 실제 그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보안사에 의한 완전한 조작이라고 한다. 한 서울대생의 경우는 휴가때 학교에 들렀다가 학내시위를 구경하였을 뿐인데, 학교 보안대 파견자에 의해 현장 연행된 이후 보안사 진양분실에 가서 일주일동안 구타 및 잠을 안 재울 뿐 아니라 식사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서 사건을 조작한 후 구속당했다고 하며, 이때의 피해로 지금도 치료중 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많다. 따라서 녹화사업은 결코 군내부의 불순세력을 순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군부정권이 통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하고 부풀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군

을 수단화하고 보안사의 불법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자행된 정치공작인 것이다.

한희철, 이운성, 최운순, 김두황, 정성희, 한영현.. 이 들 6인은 강제징집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녹화사업이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직접 행위자를 밝히는 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행위를 자행케 한 정권 책임자, 공권력을 정권유지를 위해 위법하게 행사한 통치책임자들과 그 구조를 밝혀낼 때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전두환씨는 물론 당시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항변하지 말고 이미 희생자가 있고, 죽음의 진실이 수십년 동안 가려져 있는 지금, 인간의 도리로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02. 8. 1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한다. - 2002년 8월 20일

벌써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한 지 2년여가 흘러갔고 그 사이에 2차례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또한 많은 성과를 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인하게 되었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각오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은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전체 83건의 진정사건 중 겨우 24건이 종료되었을 뿐이고, 아직도 59건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10건 이상의 사건을 종료시켜야 법정 기한 내에 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녹화사업의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씨, 유흥수국회의원 등이, 정경식 사건의 경우에는 최광태 검사, 문용섭 사건의 경우에는 명동성 검사 등 사회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 조사 및 대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 권력 기관들의 자료 미제출 및 협조 거부로 인해 많은 사건이 핵심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칫 많은 위원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민특위와 같이 실패한 위원회로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과거 가해 세력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문사진상규명이 위기에 빠진 것은 법 자체의 제도적 한계, 정부기관들의 비 협조, 수구세력의 여론 호도 등이 그 이유임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사회제단체들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위원회는 직면한 진상규명의 위기를 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3차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상범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이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기한 내에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조사한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기한 내에 끝낼 뿐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끝까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3차 법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회로서 여러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나, 만일 위원회가 직면한 진상규명의 위기를 지금 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사회적 방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사회적 투쟁 속에서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역사적 소임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다하지 못하여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되는 사건이 무려 23건이나 된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및 관련단체에서 보면 그보다 많은 사

건이 진상규명불능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기간에 쫓겨 신중한 심의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직면한 진상규명의 위기를 솔직하게 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3차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2.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의 역사적 요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의문사특별법의 3차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의문사진상규명 및 과거청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량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자의 출두와 관련한 비 협조를 넘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권한의 강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밀한 곳에서 소수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인 만큼 당시 관련자들의 양심선언 및 증언이 없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바, 이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미 2차 개정당시 이러한 권한강화 없이 기간만 연장해서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없음을 호소하였음에도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기간만 연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을 원수할 수 있을 실질적인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의 각 행정부처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시절의 공권력남용을 반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의문사는 과거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정부의 각 기관들은 과거의 잘못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각 행정부처는 해당 기관의 과거의 오류와 악행을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거의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한시기구이고 현재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결코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정부기관의 오류와 악행을 지금이라도 밝혀내고 그러한 과거와 절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국민의 정부이고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공권력과 다르겠습니까? 이제라도 자신들의 오명을 벗고, 역사 앞에서 당당해지고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 의문사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의문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문사는 지금도 발생하는 군의문사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분명히 의문사 진상규명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만이 아닌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사바로잡기입니다.

우리 유가족 및 사회제단체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그 날까지 법개정을 비롯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진실을 왜곡하고 반민주

적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2002년 8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 / 추모연대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질의서]

강제징집·녹화사업 및 마파람·921 공작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실지조사 협조 촉구 및
사령관 면담을 위한 질의서

- 2002년 8월 21일

1. 귀 기관에서는 구 보안사령부에서 시행한 소위 '녹화사업'과정에서 사망한 의혹으로 조사중인 김두황, 이윤성, 정성희, 최운순, 한영현, 한희철 등 6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미 녹화사업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해왔으나, 귀 기관에서는 한희철의 녹화사업 자료-구 보안사령부 3처 5과(소위 '심사과')의 과천분실에서 작성한 자술서 등만을 의문사위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귀 기관의 폐기문서의 보존 년한 및 폐기 기준,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문서들의 폐기의 근거, 폐기문서 대장의 유무 및 정리 항목 등에 대하여.

2. 작년 12월 중순 의문사유가족 및 계승연대의 의문사진상규명 협조 촉구를 위한 항의 방문시 귀 기관의 대공과장은 녹화사업을 단순한 군내에서 이루어진 정훈교육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의문사위에서 인용한 한희철사건의 진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녹화사업은 군에 강제징집된 자들을 휴가로 위장하여 보안사 진양분실 또는 과천분실, 지역 보안부대로 강제 연행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학생운동관련 수사 및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였음이 드러났는 바, 기무사 최고책임자로서 사령관으로서 공식 견해는 무엇인가? 귀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진행 주체와 범위, 인원, 지휘계통은 어떤 것인가?

3. 의문사위가 확보한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강제징집 이후 위와 같은 프락치공작이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진양분실 및 과천분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바,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김두황 등 5인의 사망자들을 포함하는 프락치 공작의 구체적 실태에 대해 파악한 바가 없다면 당시 관련인들의 증언 및 진술을 통한 적극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4. 녹화사업 시행 이전부터 이미 대대적으로 추진 하였던 강제징집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역할에 관한 자료 및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교육부, 치안본부, 경찰, 병무청, 안기부 등 각각의 역할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확보를 통한 실제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5. 구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에 대하여 사병 윤석양 씨의 양심선언 이후 폐지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후 마파람 공작, 921공작등이 계속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태순, 임웅준, 남현진 등의 의문사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 이들 공작에 관한 자료가 진정 폐기되었다면 당시 관련 업무 종사 요원들을 통한 실제 파악할 의사가 있는지?

6. 8월 20일 의문사위에서 발표한 '허원근살해 및 은폐조작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육군내에서 진상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하나, 의문사위의 중간보고에서는 당시 군 지휘부를 비롯한 관련인 약 200명에 대한 조사내용에 보안대개입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모든 군부대내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보안대에서 즉시 진상을 파악해서 조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의문사위에서 조사중인 사건들을 포함하여 과거 군의문사 및 현재도 발생하는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실제규명 대책을 무엇인가?

7.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만큼 법개정을 통해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 기관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의 진위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중단되는 것은 귀 기관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운 것인바, 만일 귀 기관이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부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동의하고 의문사위의 조사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자체 능동적인 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가? <끝>

언론보도로 살펴본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이유

의문사조사 과태료 부과 잘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발생한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의 의문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현직 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규명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정 지청장은 "(김씨의) 부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 측의 의문점은 조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정 지청장의 생각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바로잡기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협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조사에 진전이 없을 경우 김씨 사건은 다른 조사대상처럼 영원히 의문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 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진행중인 의문사들은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했던 '녹화사업'을 비롯해 대부분 독재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관련된 의혹이 짙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진상을 밝힐 책임이 누구보다 국가기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도 주로 국가기관들이 관계자 조사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의문사 83건 가운데 아직도 67건이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가 관련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의문사 조사에 적극 협력케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 지청장도 위원회에 출두해 자세한 수사상황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국가기관의 협조 거부 장벽에 막혀 미제(未濟)로 남는다면 2000년 10월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한 위원회 자체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위원회는 압수수색, 구인영장 청구 등의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국가기관의 비협조에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관련 조항을 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던가. 활동기한이 9월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과태료만으로 의문사 규명 안돼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검찰 간부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 규명위는 198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씨가 경찰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8개월 이상 거부해온 정윤기 영월지청장에게 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의문사 진상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처음으로 발동된 셈이다.

의문사 규명위의 첫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검찰 간부라는 점은 규명위가 부닥치고 있는 현실적 난관을 상징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자행된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 간부가 규명위의 조사활동을 정면으로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문사 규명위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도 이 간부는 무시해버렸다. 우리는 규명위가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제재결정을 한 것은 옳다고 본다. 나아가 그동안 규명위의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해야 공정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벼운 과태료 부과가 의문사에 직·간접으로 간여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면죄부처럼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00년 10월 발족한 의문사 규명위가 장준하씨, 최종길씨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 학생들 사건 가운데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규명위에 증사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직무유기 탓으로 볼 수는 없으니, 정치권이 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규명위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의문사 규명작업이 유아무야로 끝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한겨레, 2002. 6. 5

김준배씨 의문사 조사불응 검사에 첫 과태료 방침

규명위, 12일까지 진술 통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19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 의문사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정 지청장이 규명위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지난달 28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다"며 "오는 1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규명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는 첫 사례가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게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구타와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 핵심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대해,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쪽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응한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활동시한은 다가오고 '힘있는' 조사대상기관 협조거부

'벽에 갇힌' 의문사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마감시한(9월16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검찰·교도소 등 관련 조사대상 기관들의 협조 거부, 현장조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로 조사활동이 벽에 부딪혀 있다.

의문사규명위는 8월, 지난 6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인정된 뒤 국정원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가 직접 조사한 사건 이외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에 관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위원회에 공문서로 통고해 왔다고 전했다.

공안관련기관 잔뜩이 '한통속'

국정원은 교도소와 보안감호소에서 벌어진 장기수 전황공작 등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해 당시 공작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직원의 인사가 룩카드와 사망자의 인물존인카드 제출을 거부했다. 전남대 학생 문승필씨 의문사(1992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이름과 나이만을 통고한 뒤,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8개월 뒤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통고해 왔다. 국정원은 또 청주신학대학생 정법영씨 의문사(1978년)와 관련된 청주지역 담당 중앙정보부 직원의 신상자료를 1년에 걸쳐서 한 가지 항목씩 통고했다.

자료제출 쫓겨질까 '시간끌기'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시간 지연은 위원회의 한시성을 겨냥한 것으로, 가장 지능적인 비협조 행위"라고 말했다.

경남도 지난 4월2일 의문사위원회 조사관들이 노동자 박태순씨 의문사(1992년)에 대한 자료 열람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자 "국정원의 보안감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같은 사건에 대해 기무사의 관계자는 "다른 정보기관들도 문서보존실을 공개하지 않는데 군 정보기관이 공개할 수 없다"며 위원회의 현장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군내내 녹화사업에 관한 자료는 문서보존 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이 기무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 서울대생 한화철씨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편이 당시 보안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무사하는 관련 자료의 일부를 위원회에 냈다. 또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퇴직 교도관들이 진술내용을 법무부 보안과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원회 조사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법무부가 퇴직 교도관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직교도관 진술 법무부 보고도

위원회의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녹화사업 조사는 사망사건이 아니더라도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전모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85건의 의문사 사건을 접수해 그 중 4건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한겨레 2002. 7. 9

의문사위 전두환씨 소환키로 대학생 '녹화사업' 사망자 진상규명 차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숨진 서울대 후학생 한화철씨 등 6명의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문덕정 상임위원은 "녹화사업 진상을 밝히려면 이 사업 정칙임안과 운용시스템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사대상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국장도 "전두환씨를 7월말까지 소환할 예정"이라며 "이는 진상규명위 임법 취지와 진상규명위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녹화사업은 5공 초기 3년동안 보안사업부(현 기무사령부) 등에서 자행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 반정권·민주화운동

관련자 체포공작으로 지난 1988년 5공정권회 때 군 당국은 447명이 징집됐고 256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황국장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녹화사업에 동원된 100여명 피해자들의 집단 간담회를 비롯해 전두환씨 소환, 보안사 실지조사 등을 통해 5공 군사정권의 불법·폭력적인 인권유린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증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국장은 또 "이번 조사에서 또다른 녹화사업 의문사가 발견되면 직권사건으로 다루겠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마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장수기자

경향신문 2002.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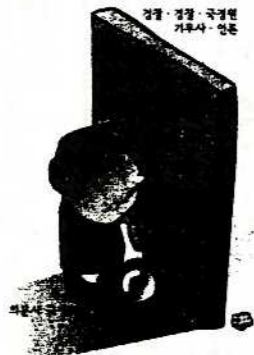
월/요/진/단 ① 중간점검 / 의문사 규명위

정권유지에 국가기관 총동원 입증

종결 23건 중 4건 의문사 인정 ... 언론 '판죽결기'도 걸림돌

성홍희 기자 hssung@naeil.com

의문사규명위가 활동시한연월 9일을 두... 2년 남짓된 규명위 조사활동의 성과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가권력기관을 총동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활동을 파했다"는 추정이 일부 납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경향·경향·국정원 기무사·인문

진실규명의 결정적 단서를 전 경찰 경찰 3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조사협조 거부와 위원회 내부의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22일 4차 조사 대상 85개 사건 가운데 불과 23건을 종결처리했을 뿐이다. 위원회 스스로 조사활동 마감시한을 두달여 남긴 시점에서 나머지 52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권력기관 조사협조 거부, 난관 봉착

조사대상 88건 가운데 52건 미해결 ... 검사 3명도 조사불응

김은광 기자 powertp@naeil.com

의문사규명위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권력기관이 조사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경찰 고도소 등 관련 조사대상 기관들은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자료제출 등 조사협조를 거부한 데다 마감시한이 9월 16일로 다가오면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을 위해서는 경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해당 권력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일주일 지나서 관련자 이름 하나 통보해주고 또 일주일 지나서 주소 통보하는 식이다"라며 "심지어 해당 기관의 민간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협조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소연했다.

했다. 여기에 수사검사가 프락치 공작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매수된 김씨 선배를 구속시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군 복무 중 의문사한 사건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87년 육군 모 사단에서 실종처리된 김소진씨 의문사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DNA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영종한 사람의 유골을 군에서 의문의 실종을 한 사람의 유골로 결론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연 일체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또 김준배 사건 담당검사였던 정문기 영일지청장을 비롯, 3명의 관서는 모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 기관의 한결같은 조사 불응은 법률로 보장된 위원회의 조사권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기관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 등의 수사권한이 없다.

● 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권위주의 항거, 실정법 위반 필연”

지난 9일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의원회)가 한층더 강부였던 김준배를 의문사로 인정하고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한 데 대한 반론이 빚발했다.

이에 대해 김준곤(47· 변호사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원회와 역할과 성격이 같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의문사 위원회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정수호 여부 민주인정 잦대

권력기관 조사협조 절실

집서를 의미한 각종 악법이 생기게 마련이라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태동된 대표적인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며 폐지되더라도 형법 등을 손보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독보다 실이 많은 이 법안의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시한 늘려라”

60건 진상규명 못하채 9월16일 활동종결 직면 유가족·사회단체, 권한강화등 입법청원 움직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85건의 의문사 접수사건들 중 60건의 진상을 아직 규명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인 9월16일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자,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시한연장과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나, 정처권이 추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위원회 의 법정시한 이전에 대응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장준하 사건과 1980년대 강제징집, 군부대내 녹화사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8월7일부터 21일 까지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관련 기관들을 마지막으 실지조사할 계획이나 위원회의 권한제한 등으로 그 성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경혜 2002. 7. 30

의문사위 국정원 방문조사

‘자료제출 비협조적’ 관련서류 존재여부 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오는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요청한 자료중 거부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을' 약속,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면서 "의문사규명 특별법 22조에 따라 상임위원 등 10명이 처음으로 국정원 자료보존실을 방문해 제출을 요구한 관련자료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신 2002. 8. 2

다"며 "관계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시한연장을 정부쪽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원회의 법정시한을 9개월로 한정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위원회는 2001년 7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3월 2차 법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의문사위원회의 시한연장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내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시한종료로 인해 '진상규명 불가능'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는 의문사는 장준하 사건 등 모두 23건이라고 위원회 측은 말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료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국정원장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결국 무산됐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국정원에 장준하사건 등 12건의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문서실 확인불가' '별도자료 없음' 등의 회신이나, 자료 일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김재정집·녹화사업 피해자 간담회'에서 집집이 변칙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중 일부는 대북 심리전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미체사건 많은데 시한 앞으로 한달여

의문사추 하지부지 되나

13건중 24건만 조사 끝내
권한강화등 法개정 없으면
쿠더기 규명불가 우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료시
19월16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
면서 권한 강화와 조사 연속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불가' 판
결들의 무더기 '진상규명불가' 판
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가 위원회 안팎에서 커져 가고 있
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6일 "특별사원
내제 규명을 위한 진두원(金斗權)씨
는, 7일 국정원 실시조사 등을 앞
두고 있지만 강제조사 권한 없이 한
달 만에 모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83건의 사건 중 현재 조사가
끝난 사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의문
사 15로 통하는 최종결(崔鍾吉) 장

의문사위원회 조사 현황

(단위:건, 현재 진행, 진행 시간: 시간)

의문사 명수	5
기간 명	17
진행 명	1
진상규명 불가 명	1
조사 진행 중인 사건	59

준(張俊河) 이내장(李來昌·중앙대
안정법페스 총학생회장) 이철규(李
哲賢·조선대 교직원위원장) 박항
수(朴昌休·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건 중 결과와 발표된 것은 최종결
사건 뿐이다.

특히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의 장
준하 보고문건 등 위원회측이 모
형한 주요자료에 대해 "증안 자료
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9년사망 탁은주씨 사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19
9년 실종된 뒤 숨진 친원대 교육화
과 2년째 탁은주(당시 19세·여)씨 의
문사와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의문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은 의문
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
지와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의
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지 못
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3월 의문
사특별법 개정때 관련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됐다.

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
살로 처리한 92년 수사결과에 부정
결론이 없어 인정하기 힘들고, 세상
과 타협하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서로 보기도 부족하지만 부검결과
사체 외부에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턱새가 자
살했는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뻐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턱새는 91년 12월 실종,
이듬해 1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익
사체로 발견돼 무연고 묘역에 묻혔
으며 지난해 진상규명위가 시신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실시, 1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이진화기자

갈길 비쁜 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화운동경신계승국민연대 이
은경(李銀敬) 시무처장은 강제소환,
위증죄 적용 등 권한 강화만 있었어
도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충분히 진
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시정보다 권한 미비가 더 큰 한계인
만큼 8월 중 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제
발의해 법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
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창수 위원장이 타살됐다는 강경
사(본보 2일자 31면)가 나왔지만 국
정원이 안기부 개입 여부에 대한 조
사원조를 꺼리고 있는 등 노동자의
문사 사건 상당수가 다시 역사 속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며 "7일 국정원
항의 집회와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을 통해 특별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화기자 river@hk.co.kr

창국일보 2002. 8. 7

의문사 규명위 조사 성과 전망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진두원 노태우 두 진지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녹화사업의 진도 등이 밝혀질 것인지 여
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정확입안과 운
영시스템 등 녹화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하지만 두 전직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
우 강제소환 등의 권한이 없어 '출석요구'라는
기폭만을 남긴 채 유아무야될 가능성도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권력의 핵심기
관인 보안사(현 기무사) 안기부(현 국가정보
원) 경찰 및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함께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전전대통
령뿐이었다"며 "이때문에 전전대통령을 피진
정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녹화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화사업에 대한 조사
는 사망자는 물론 당시 민간성 파과를 경험했
던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신군부의 정권장출 과정과도 연계

운동권 학생 녹화사업 '그늘' 밝혀질까

全·盧전대통령 출석 관심

거부면 유아무야 가능성

다만 과거청산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 및 향후 전망=진
상규명위는 녹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군복무 중 출신대학에서 강제 프락치활
동을 강요받은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
당사자들로부터는 '실제로 프락치활동을 했
다'는 진술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프락치
활동을 목적으로 했던 진양본살에서는 정강이
사이애 나무 동등이들 끼고 밟는 등의 괴악하
위와 구타가 일어났기도 했다. 당시 녹화사업 대상자에는 정진영
과 있다. 당시 녹화사업 대상자에는 정진영
보다 어리거나 징병검사 결과 현역임대 불가
판정을 받았던 학생들, 심지어 고도소 복역을
통해 군면제를 받았던 학생들도 포함돼 있었
다.

녹화사업은 여러 부처간의 공조와 연계로
진행된 만큼 이들 기관의 명명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말이다. 하지만 9월16일로 한정돼 있는 조사
시한과 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고려한다면 많은
한편이 예상된다.

정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
면 관련자들이 출석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패퇴
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처벌할 수단이 없다. 진
상규명위 관계자는 "과징금 국가기관의 자료
미제출, 실시조사 거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대해 강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위원
회의 한계"라며 "이들 극복할 수단이 현재로서
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녹화사업이란=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보안사가 중심이 돼 강제징집된 학
생운동 가담자들의 사상을 억지로 개조하고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정략을 가리킨다. 이 기
간에 무려 600여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과 변동
자가 돼 강제 징집됐다.

1980년 초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강제징
집 조처를 통해 운동권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학생들이 다수 입
대항자 이에 대한 대치가 불가피했으며 녹화
사업은 이들 강제 징집자의 제도가 가까워지
는 82년 가을부터 본격화됐다.

하운해기자 justice@kmb.co.kr

창국일보 2002. 8. 9

장준하씨 '危害분자' 분류 밀착감시

75년 中情작성 문건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 장준하(張俊河)씨를 '위해(危害)분자'로 분류하고 프락치를 통해 조직적으로 감시했다는 사실이 올 초 국가정보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에 보낸 문서에서 드러났다.

8월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장씨를 담당했던 중정 6국 5과 박모계장은 75년 3월 31일 작성한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문건에서 "장씨는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 활동을 조종하는 인물'로 범법 자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정은 또 보고서에서 관찰경찰서 인력을 동원해 장씨의 일일동향을 파악한 것은 물론 당시 장씨와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운모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정치활동을 감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반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됐다.

진상규명위 김준곤(金俊坤)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보내 온 자료를 통

해 중정이 장씨를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했음이 입증됐는데도 유독 사망 당일 기록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고서 작성자가 최근 다른 부서에 관련 자료가 많다고 진술한 만큼 국정원은 실지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7일 장씨의 이철규(李哲煥)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하려 했으나 국정원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의문사진상규명위, 검사에 동행명령장

88년 문용섭씨 사망 관련

해당검사 "응할 이유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문용섭(文龍燮)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해 온 명동성(明東星) 안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 사건'은 88년 6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광무택시에 근무하던 문씨가 회사 비리에 항의하다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다.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지난해 11월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사주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 검사는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신씨의 진술을 듣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 은폐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6월 명 검사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 검사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해명서에서 "당시 신씨는 회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동행 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전두환씨 내일 조사"

녹화사업 관련 출석요구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5공 시절 강제징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녹화사업' (일명 특별정훈교육)과 관련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10일 오전 9시반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8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연장 건의

한위원장, 청와대에 의견서
의증치벌등 권한강화 촉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상심법 위원장이 위원회의 권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의문사진상규명에 대한 처리상황과 진상-법정조사시한 만료를 앞둔 의견'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김 대통령에게 보내 "헌법법대로 9월16일 조사할 동을 마칠 경우 일부 사건을 빼고는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다"며 "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가장 비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의문사특별법의 시한 제약 폐지, 위원회 조사권한 보강, 증인·참고인 등의 위증처벌 규정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인 정치 목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문사 희생자의 민주화운동 여부가 확인되지 못

하더라도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 10월 9개월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짜 기한을 연장했으나, 위원회의 한시성과 국정원·기무사·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시한 연장 등을 위한 입법정원을 준비 중이다.

최해정 기자 idun@hani.co.kr

한겨레 2002. 8. 13

의문사 진상규명 '갈수록 공지'

강제조사권 없어 고위층 잇단 비협조

시간·자료 부족 83건중 24건만 종결

진실과 화해를 표방하며 활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전직 대통령과 검사 등 관련자와 국정원 등 기관들의 잇따른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나 조 사시한(9월16일)이 한달밖에 남지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의문사위는 1987년 대우중공업 재직중 실종돼 9개월여만에 아산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된 정경식씨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사실로 처리한 최광태(현 대구고검 소속)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거부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가 의문사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윤기(현 영월지청장·김준배씨 사건)검사와 명동성(현 인천지검 차장·문용섭씨 사건)검사에 이어 세번째다. 출석요구를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도 거부 의사를 밝혔고, 노태우 전대통령과 이학봉 전의원도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7일 의문사위의 국정원 실지조사도 국정원측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윤재원 2002. 8. 16

이처럼 각 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가 계속됨으로써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도 벽에 부딪혔다. 현재까지 의문사위에서 접수한 83건의 사건중 24건만이 종결됐다. 의문사위 확인심사무 국장은 "시간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23건은 보강조사나 유족의 이견을 반영한 추가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시민단체와 유족회 등은 "강제 조사가 없는 의문사위의 태생적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의문사위는 2차례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있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할 뿐 강제조사할 권한은 없다. /오남석기자 greentee@munhwa.co.kr

"의문사 특검제로 풀자"

시민단체 '진상규명위' 조사권한 강화해야
조사기간 제한철폐·압수수색·벌칙조항 신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7면

국민연대는 이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의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만 현재 조사대상 사건 83건 중 58건이 처리되지 않아 조사시한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또 "전두환씨를 비롯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출석거부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거부로 진상규명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특검제를 주요 뼈대로 하는 개정안과 현재 이창복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두 개정안 모두 조사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시한에 임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또 피진정인에 대한 통회감청,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등

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나 증거를 인멸·위조한 자, 통화내역 등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특별검사제 도입 개정안은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상임위원을 특별검사보로, 위원회 조사관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수정안보다 더욱 강화했다.

조찬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치참한 형태의 주검으로 발견된 자식을 자살이란 오명으로 덮어 씌울 때 부모의 심정은 꺾어진다"며 "우리 역사에 한번도 이루어지 못한 과거청산의 첫걸음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승용 기자 ysy@laborw.com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백순환 민주노동 비대위원장이 법개정 추진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안일권 기자 pi999@laborw.com

노동일보 2002. 8. 21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기간연장 건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 박형규 민주화운동진상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9명은 21일 오전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형규 이사장은 "조사기한의 연장과 조사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영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예외로 위원회에서 기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최영도 변호사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결정된 내용을 참석 자문위원 9명의 명의로 조만간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등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연립뉴스 2002. 8. 22

조선일보 2002. 8. 22

【동양일보 기자 seon@chosun.com】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형규 이사장은 "조사기한의 연장과 조사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영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예외로 위원회에서 기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최영도 변호사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오종렬) 자문위원 9명(박형규 이사장, 최영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회장,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최영도 변호사,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최영도 변호사 등 19명)로 구성된 의문사위 자문위원회가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일보 2002. 8. 22

다음 달 16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진상규명위는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각종 의문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녹화사업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1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 등 7명은 5공화국 당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하는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전 보안사령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무사 측은 "84년 녹화사업이 종료됐고 당시 보안사의 담당 부서도 해체되면서 관련 자료 대부분이 파기됐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당시 보안사의 녹화사업 담당자가 '녹화사업' 신사자 1000여명과 전체 관련자 5000여명의 존안자료를 생산해 인수 인계했으며 이는 영구문서로 보존돼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에서 증언했다"며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호림 사회부
 aryssong@donga.com

이날 기무사 앞에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기무사 측의 자료제출 거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들 허원근(許元根)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18년 만에 밝혀내고 시위에 참가한 허영춘(許永春)씨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문사 조사에 대한 관련 기관과 관련자들의 협조를 기대해 본다.

기자의 눈 손-盧-기무사의 의문사 버티기

일로 마감된 1차 출석 요구에 아무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도 1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책 집행"이었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2차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로서는 "동행명령"을 한 번 더 내린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의문사조사 시한 연장해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빚어진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동안 올린 실적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의문사위는 고 최종길, 고 장준하씨 등의 죽음과 관련해 국가기관들에 의해 조적적으로 은폐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냈다.

만취 상관의 총질로 사망한 사병이 군부대에 의해 자살로 은폐 조작됐음을 규명해낸 것도 실로 소중한 소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처벌 시효는 지났지만 은폐 조작 관련자들 중에서는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국방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문사위는 접수된 85건 중 29건을 종결하고 3분의 2에 가까운 56건이 계속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법적 활동만료 시한(9월 16일)을 앞두고 있다. 시한을 의식해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국가기관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422일 동안 벌인 농성의 산물이다. 타살이 자살로 조작됐던 병사의 아버지 허영준(許永眷)씨는 가슴

동아일보(서울) 2002. 8. 22

에 묻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18년 동안 뛰어 다녔다고 한다. 계속 조사 중인 56명의 죽음 중에서 어느 죽음을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활동 시한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문사위가 국가인권위의 통합해 자료 부속으로 인해 '조사 불능' 처리된 사건이나 장기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한 시한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더라도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의 진실 캐기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법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의문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적지 않은 의문사가 발생했던 북핵사업과 관련해 의문사위의 소환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광문 혹은 서면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시대적 과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설

의문사규명위 시한 연장해야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허영준 일병의 타살사건은 오는 9월 16일로 끝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2000년 10월, 9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위'는 지난해 7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면서 활동했으나 접수된 83건 중 24건만이 종결을 보았다. 국정원·기무사·국방부 등 핵심자료를 갖고 있을 법한 기관의 비협조와 참고 인물들의 증언거부 때문이다.

허영준 일병 사건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재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건 당시 위장을 지시한 상사의 명령에 의해 죽은 전우에게 2발의 총을 더 쏘았다는 보도도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 시점에서 믿기지 않을 뿐, 당시에는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으니 부대장이 문책을 받고 진급에서 누락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정을 통하던 시절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생명·인권 의식이 척박했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의문사들을 규명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나 특정 개인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보다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과 그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처럼 미개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특별법이 허용하는 시한연장도 다 사용했으므로 법개정이 없는 한 여기서 손을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손도 대지 못한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의문사위'가 요구한 시한 폐지 혹은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의문사위'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의문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비롯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증언을 거부하지만 변호할 수가 없는 것이 현 특별법의 한계다. 진상규명을 위한 시한연장이라면 참고인, 증인 등의 강제구인과 위증,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대한매일 2002. 8. 22

의문사규명엔 시효가 없어야

1984년 자살로 발표된 허영준 일병 사망사건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군부대 회식중 술취한 하사관의 M16소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허 일병을 상급자가 살해한 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예상일이 아니다. 군수 사담국이 그동안 도대체 무얼 했기에 시신에 총질까지 한 타살사건이 자살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허 일병의 사망은 그가 소속됐던 7사단과 2군단 헌병대뿐 아니라 육군범죄수사단 조사에서도 자살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장 재조사를 벌여 가해자는 말할 것 없고 이 사건 조작 은폐와 부실수사 관련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8년 전 일이고 당사자들이 대부분 전역을 했다지만 허 일병이 총맞는 것을 본 사람이 10명도 넘는다면 진상규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이다. 의문사진상조사위에 접수된 사건만도 83건이나 된다. 이중 종결된 것은 24건에 불과하다. 허 일병의 경우 그나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생업까지 내팽개친 허영준씨가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결실이다. 나머지 59건은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출석거부 등으로 미뤄 한 결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위 활동이 오는 9월 16일로 끝난다.

우리는 의문사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을 대폭 연장하고 그 권한을 더 강화해 나머지 사건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면한다는 것을 많이 안다.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시효에 관계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2002. 8. 22

의문사 규명에 협조하라

18년 만에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진상은, 정말 어찌 구니가 없다. 술 취한 하사관의 총에 맞아 숨진 것만 억울한 일인데,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했다니 이렇고도 대한민국 군대인가 싶다. 벌어진 집 이들은 군대에 가고, 자기를 억울하게 죽어도 시인조차 조작된다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해당 부대의 장교와 하사관들은 아간 정 체는무시간에 술판을 벌였고, 정교로부터 인주가 부 실하다고, 절해당한 하사관이 허 일병을 구타하려다 총이 발사됐다 한다. 이들은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 기려고 시신에 2발의 총질까지 더해, 자살로 조작했다.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는 대체 눈을 뜨고 있었나 감고 있었나.

국방부가 육군검찰단에 재조사를 지시했으니 그 진상이 낱말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사건의 개요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지만, 은폐·조작과 군명국의 처리과정은 아직 세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 사건 말고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의문사는 아직도 많다.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관계기관들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김일에도 기무사를 방문, '북화사업' 관련 사망사건에 관한 문서 규정집과 당시의 자료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무사는 이미 10년 전에 자료를 추락했으며 문서규정은 기밀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7일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법을 고쳐서라도 의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시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02. 8. 22



21일 오전 서울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앞에서 의문사유가족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 허원근씨 사망 조작사건의 실지 조사 협조와 기무사령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kdaily.com

'허일병' 연대·사단 간부 조사

의문사규명위 "은폐 기담 가능성" 기무사 거부 북화사업 조사 무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군 부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이 18년 만에 드러난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 은폐 과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당시 허 일병의 소속 연대와 사단급 간부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명의 관계자는 21일 "군부대의 지휘계통을 감안할 때, 독립된 전투단을 구성하는 연대급에서 소속 중대에 서 일어난 일을 물렸을 리 없다."면서 "대대장뿐만 아니라 연대장까지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현행대 수사과정에 사단장의 임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단급 지휘관과 참모선도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규명위는 사건의 은폐조작을 위해 허 일병 사망 직후 대대급 간부까지 참여한 대책회의가 열렸고,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특별교육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 현장에는 희식에 참여한 중대 간부 외에도 중대본부 주변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일병을 쏜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은 사건 직후 아무 징계도 당하지 않고 사단내 다른 중대로 전보된 뒤 승진해 90년초 상사로 예편했고, 최근 위원회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총을 잡은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총을 쏘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준근 상임위원 등 규명위 관계자 7명은 5공화국 시절 강제징집과 북화사업 관련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재국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했으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기무사측은 "강제 징집제도는 정부부처 주도로 실시됐으며 84년 9월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안사 담당부서도 해체되고 북화사업 관련자료도 대부분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제2, 제3 군의문사도 규명하자”

은폐·조작에 “신병비관” “월북기도” 결치레 채수사...유족 협박·감시도

■ 군 장막속 파묻힌 진실

지난 1984년 솔취한 김부의 총에 맞아 숨진 허원근(당시 22살) 일병의 사망원인이 군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조작을 통해 자살로 처리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는 또 의문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의문사의 경우, 폐쇄공간에서 일어나 사건 은폐가 용이하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도 대개 군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전 세계 허 일병 사고처럼, 사실 ‘자살’로 둔갑한다는 위문(그중 일부는 ‘자살’로 둔갑한다)도 유족들은 군으로부터 협박, 회유, 감시를 받는 등 이중의 고통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3년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순진 장군관대령 이윤성(당시 21살) 일병은 당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받다 지살했다’고 발표했다. 이 일병의 1주기가 되어 화살들이 추도회를 열자 군 수사기관원들이 유족들의 집으로 찾아가 ‘당신들이 화살들을 사주하느냐?’고 협박했다고 이 일병의 매형 박정관(47, 회사원)씨는 회고했다. 이 일병의 유족은 포란공원 난립당에 안치되었는데, 화살들의 흔적과 추모가 잇따르자 또다른 후환을 걱정한다. 유족들이 유족을 강물에 뿌려야만 했다’고 박씨는 덧붙였다. 이 일병의 어머니는 위아들의 죽음을 피로위하다 여러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또 83년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지살한 것으로 조사된 한화철(당시



“못들어간다”... 21살 중순진 장군관대령 이윤성(당시 21살) 일병을 위해, 임원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준근 상임위원으로 해과 안병욱 위원(가운데) 등 조사했다. 군 관계자로부터 ‘협박·회유’가 있었다. 임원진 기자 stepenc@hani.co.kr

22살) 일병의 가족들도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감시 등으로 고통을 당해왔다. 아버지 한상훈(75, 경기도 성남시)씨는 “군 수사기관원들이 집에 드나들며 동태를 감시했고 전화도 도청했다”며 “아들을 화장할 때도 전복군인들이 불리 하라고 독촉했다”고 말했다. 허 일병의 아버지(경남창(82)세)도 “백년장인 화정에서 군 헌병대로부터 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을 보며, 허 일병 사건 수사의 경우 군 수사기관원들이 방적으로 군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받

은평일보 2002. 8. 22

의문사 덮으려는 세력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학생들의 진실을 밝히려고 기무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실지조사가 무산됐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와 관련한 의문사는 이른바 ‘녹화사업’ 11건에 이르는데도 기무사는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지난 92년 모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이다. 대통령직속 의문사규명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하면서 기무사는 “대통령이 봐도 보여줄 수 없다”거나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며 사뭇 당당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군 내부의 일기기에 여러 극비보안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녹화사업이 과연 그런 성격인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의문사와 관련한 실지조사 거부는 비단 기무사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도 의문사규명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법을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검사들조차 의문사규명위의 동행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무사의 자료 공개 거부가 솔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죽은 허원근 일병을 군이 18년 동안 자살로 은폐한 사건이 밝혀진 직후에 일어났다는 데 있다. 군이 허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전우의 주검에 총을 두 발더 쏘는 만행을 저지르고, 현장에 있던 사병들에게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 조작을 위해 특별교육까지 한 사실마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녹화사업 의문사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가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연장돼야 하고 왜 권한이 강화돼야 하는지 오히려 입증해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외부자문위원 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미루어 법 개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의문의 죽음을 덮으려는 세력에 맞서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겨레 2002. 8. 23

허원근씨 자살조작 특조단도 은폐의혹

1984년 하사관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과 관련, 대대장이 199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사건의 책임을 이미 사망했던 김모 중대장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3일 “당시 특조단 조사에서 대대장이 ‘김모 중대장이 월북을 하려다 전령인 허 일병의 저지를 받아 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음을 지난해 국방

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당시 헌병대 수사에서 허 일병을 자살로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김모 중대장은 지난 99년초 친구의 집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대대장의 진술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방부가 대대장의 진술을 조작해 이미 사망한 중대장에게 사건을 덮어씌우려 한 것인지 조만간 대대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택기자

세계일보 2002. 8. 24

한국시론

이철학 천주교 인권추진위원장



BC 370년께 신혼이던 비제바는 다윗 왕 수하의 군인인 남편 우리아의 전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다윗 왕이 비제바와 혼인을 했다. 그 내막은 이렇다. 다윗 왕은 어느 날 예쁜 여인 비제바에게 한눈에 반해 데려다 정을 통했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아내와 밤을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 전사하게 만든 것이다.(성경 사무엘 하 11장 참조)

진실은 폐속에 고통받는 유족

1984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에 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 발표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순취한 상관이 쓴 총에 가슴을 맞아 숨진 상태에서 이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 두 발을 더 쏘았고 이를 사실로 몰아 갔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뒤엎는 반인권적 폭거였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흘러 허 일병의 아버지는 이제 63세가 되었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뛰어다닌 세월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긴 시간이었다. 이번 발표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타실도 사실상 뒤바

뀔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거의 20년간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뛰어다닐 때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어! 하급지대는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고참이 되면 기해지가 되는 현실 속에서 군대 많이 좋아졌다며 반인권적인 군 생활을 추억처럼 되뇌지 않았던가. 그러나 앞으로 허 일병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욱 큰 문제는 군에 간 젊은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고 허 일병의 부모처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은 눈병이처럼 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의 암흑기였던 80년대는 매년 1000여명이,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최근에도 300여명이 죽어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군의문사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국회와 국방부에 이런 기습이론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가족들과 함께 지

軍, 명예회복을 위하여

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다. 석연치 않은 자식의 죽음을 부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군에서는 아직 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타살의 혐의'가 없으므로 자살이라는 판에 박힌 결론을 위임적인 자세로 유족들에게 수용하라고 한다.

이제 국가와 군 당국은 실추된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에 간 건강한 청년이 사망했다면 이유가 어쨌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망자와 사망자의 유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군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관·군 함께 의문사 조사할

또 군에서 주장하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군에서 지도록 해야 한다. 허 일병의 사건도 헌병대가 조사를 했고, 육군 범죄수사단에 고발까지 했지만 기각됐다. 현장과 목격자, 수사단, 참모인, 각종 시간관련 증거들이 모두 군대 내에 있는데도, 유족의 현장점근을 막고 현장과 사체 사진에 대한 촬영을 불허하고 수사가 특 열람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살이 아님을 유족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에서만 가능한 주장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모든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허 일병 사건에서 보듯 군만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는 결코 진실규명을 할 수 없으며 유족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다. 과거 병역비리조사단처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인권 범죄 공소시효 없어야”

인권위, 인권유린 범죄자 방패막으로 악용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사 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인권위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최근 허원근 일병의 군부대 내 살인사건과 관련한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런 제도적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법 적대적 의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며 국내 법에도 시효부작용의 원칙이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또 특별법의 제

정을 위해 하루 빨리 법무부 내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인도적범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금지 원칙간의 충돌 논란과 관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급효금지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역류현상이 계속되어 법질서 자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운동과 관련 "특별법 적용 범위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법적용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용 기자 ysy@laborw.com

노동일보 2002.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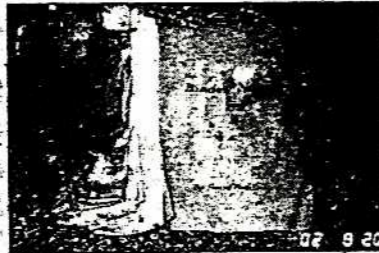
前 보안사 과장, 의문사툰 조사직후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소각장면 촬영해 남겨

5공 시절 운동권 학생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공작사업(녹화사업)과 관련,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받은 핵심인물인 위원회에 녹화사업 중요자료를 넘겨 주기 직전인 20일 이를 완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관련자는 문서 소각 장면(사진)을 촬영해 의문사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6일 "1982년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과 과장이었던 서의남(徐義男) 씨를 19일 소환,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던 중요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나 서씨가 이를 바르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씨는 21일 재소



환 때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고 위원회가 서씨 집에 대해 제차 방문조사에 나서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소각한 문서는 강제징집자의 조사 및 프락치 공작내용과 당시 개별 책임자를 명시한 4개월에 걸친 보안사의 업무 일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의혹이 일고 있는 한영현씨

조사내용을 비롯, 녹화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무·국방·문교부 장관의 합의각서' 사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녹화사업 직접 대상자는 1,000여명, 관련자까지

합치면 5,000여명에 이르렀고, 보안사 근무 시절 17개 캐비닛에 관련 자료를 담아 타부처에 이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83년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등은 녹화사업 자료를 토대로 종교, 노동, 학원가에 대해 '평화공작'이라는 대규모 좌경운동 색출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국방부 許일병사건 특별조사

특조위 구성... 민간인도 참여

국방부는 26일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허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정수성(鄭壽星·육군 중장) 1군 부사령관

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9면
국방부는 특별조사위를 검찰과 현병 수사관계자로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의문사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허 일병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군의 마땅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조사결과,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모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건 조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15년을 넘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법기자 hbkwon@hk.co.kr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를 방문, 고 허원근 일병 아버지(오른쪽) 등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全基炳기자 gibong@chosun.com

“의문死 규명 시한 연장 노력”

盧 후보, 허일병 부친 등 유가족 20여명 만나

신당 창당 논의가 소강국면에 들어 서면서 '정책투어'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는 있으나 진상규명의 시효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상관들에 의한 타살 및 조직적 은폐'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허원근 일병의 부친 허영춘씨 등 유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노 후보는 오는 9월 16일이 법적활동 시한인 의문사진상조사위의 시한 연장, 조사권한 강화 등의 건의를 받고 "의원들과 상의해 진상조사위 설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80년 이후 군부대 사망자가 8000명이 넘고 그 중 자살처리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살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辛貞錄기자 jrshin@chosun.com

의문사 사건 조사보고 현황

□ 결정유형(85건)

'02. 9. 16

구 분	계	기 각	불 능	인 정	각 하	기 타
계	85(2)	33	30	19	(2)	1
조사 1과	12	3	6	3		
조사 2과	28(2)	11	9	7	(2)	취하 1
조사 3과	28	14	9	5		
특 조 과	15	5	6	4		

□ 사건별 결정내용(85건)

구 분	계	기 각	불 능	인 정	각 하	기타
계	85(2)	33	30	19	(2)	1
조사 1과	11	3 김제강, 이수영, 김석조	6 정은복, 양상석, 박창수, 장준하, 이철규, 이내창	3 최종길, 김창수, 장석구		
조사 2과	28(2)	11 고정희, 김상원, 문영수, 박현강, 심재환, 우수열, 정인택, 장종훈, 최봉대, 박인순, 이재문	9 문승필, 이재호, 김용갑, 우종원, 김성수, 이승룡, 임태남, 신호수, 정경식	7 김준배, 오범근, 정법영, 이덕인, 박동학, 문용섭, 박태조	(2) 황선철, 정종인	1 배중손 (취하)
조사 3과	28	14 송중호, 김영환, 우인수, 노철승, 박필호, 정연관, 박상구, 박종근, 이이동, 허원근, 이재근, 김소진, 이진래, 정도준	9 김용권, 박성은, 이승삼, 최우혁, 임용준, 이창돈, 남현진, 최은순, 김두황	5 임기윤, 한희철, 한영현, 이운성, 정성희		
특 조 과	15	5 신영수, 김진홍,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	6 탁은주, 심오석, 권두영, 박태순, 노진수, 안치용	4 박영두, 전정배, 변형만, 김용성		

□ 유가협, 개별·직권 관련(85건)

구 분	계	유가협 관련	개별·직권관련	비고
계	85(2)	44	39	
조사 1과	11	(최종길), 장준하, 이철규, 박창수, 이내창	김제강, 이수영, 김석조, 정은복, 양상석, (김창수), (장석구)	
조사 2과	28	배중손, 고정희, 김상원, 문영수 (김준배), (오범근), (정법영), (이덕인), (박동학), (문용섭), 문승필, 이재호, 김용갑, 우종원, 김성수, 신호수, 정경식	박현강, 심재환, 우수열, 정인택, 장종훈, 최봉대, 박인순, 이재문, 이승룡, 임태남 (박태조),	
조사 3과	28(2)	(임기윤), (한희철), (한영현), (이운성), (정성희), 김용권, 박성은, 이승삼, 최우혁, 남현진, 최은순, 김두황, 송중호, 김영환, 우인수, 노철승, 박필호, 정연관, 박상구, 박종근, 이이동, 허원근	이재근, 김소진, 이진래, 정도준, 임용준, 이창돈 *정종인, *황선철(2)	
특 조 과	15		신영수, 김진홍,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 (박영두), (전정배), (변형만), (김용성), 탁은주, 심오석, 권두영, 박태순, 노진수, 안치용	

※ 범례 : 취하(1건), 기각(33건), (인정)(18), 불능(26), *각하(2)

본회계: 10.25. 11.7-8.

결정문 미작성 현황

'02. 9. 16

연번	사건명		표결 일자	표 결 결 과	결정문 작성	비 고
	사건 번호	사건명				
1	제63호	김용권	8. 24	불 능 전원 의견일치(8)		
2	제12호	이진래	8. 24	기 각 전원 의견일치(8)		
3	제78호	김진홍	8. 24	기 각 불능(1) : 이원영 위원 기권(1) : 박은정 위원 기각(6)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이운성, 백승현, 안병욱 위원		
4	제23호	이덕인	8. 30	인 정 기권(1) : 백승현 위원 인정(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이운성, 박은정 이원영, 안병욱 위원		1상임, 이원영위원이 작 성기로 함
5	제 2호	임용준	8. 31	불 능 전원 의견일치(8)		민주화운동관련성 및 진상 규명 불능사유 보완
6	제75호	이승룡	8. 31	불 능 전원 의견일치(8)		민주화운동 관련성만 인정 하지는 보충의견 병기 (1상임, 박은정)
7	제34호	오범근	8. 31	인 정 기각(3) : 이원영, 백승현, 이운성 위원 (민주화관련성만 인정) 인정(5)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위원		공권력의 간접적 행사와의 관련성 보장후 소수의견 첨부
8	제69호	권두영	9. 7	불 능 기권(1) : 박은정 위원 제척(1) : 이운성 위원 불능(6)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백승현, 이원영 위원		
9	제79호	박동학	9. 7	인 정 불능(1) : 백승현 위원 기각(2) : 이원영, 이운성 위원 인정(5)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위원		
10	제 9호	김창수	9. 7	인 정 전원 의견일치(8)		

결정문 미작성 현황

'02. 9. 16

연번	사건명		표결 일자	표 결 결 과	결정문 작성	비 고
	사건 번호	사건명				
11	제70호	정은복	9. 7	불 능 표결불참(1) : 위원장 각하(1) : 박은정 위원 불능(6) :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이원영, 백승현, 이운성 위원		
12	제 1호	양상석	9. 7	불 능 표결불참(1) : 위원장 이의 전원 의견일치		
13	제27호	문승필	9. 7	불 능 표결불참(1) : 위원장 기각(1) : 이운성 위원 불능(6) :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이원영, 백승현, 박은정 위원		
14	제46호	박성은	9. 7	불 능 표결불참(1) : 위원장 기각(1) : 이운성, 안병욱 위원 불능(5) : 김준곤, 이석영, 이원영, 백승현, 박은정 위원		
15	제64호	최우혁	9. 7	불 능 표결불참(1) : 위원장 인정(1) : 이석영 불능(6) : 김준곤, 이운성, 안병욱, 이원영, 백승현, 박은정 위원		
16	제26호	문용섭	9. 9	인 정 기각(3) : 이원영, 백승현, 이운성 위원 인정(5)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위원		
17	제40호	박필호	9. 9	기 각 표결참여 의원 전원 기각(7) : 김준곤, 이운성, 백승현, 안병욱, 이원영, 이석영, 박은정 위원		
18	제10호	이창돈	9. 14	불 능 기각(2) : 안병욱, 이운성 위원 불능(6) : 위원장, 김준곤, 백승현, 이석영, 박은정, 이원영 위원		
19	제51호	정도준	9. 14	기 각 기각(6) : 김준곤, 이석영, 이운성, 백승현, 안병욱, 이원영, 박은정 위원 기권(1) : 위원장		
20	제41호	정연관	9. 14	기 각 기각(6) : 김준곤, 이석영, 이운성, 백승현, 안병욱, 이원영 위원 인정(2) : 위원장, 박은정 위원		

결정문 미작성 현황

'02. 9. 16

연번	사건명		표결 일자	표 결 결 과	결정문 작성	비 고
	사건 번호	사건명				
21	제30호	이재호	9. 14	불 능 불능(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백승헌, 박은정, 이원영, 이운성 위원 기권(1) : 안병욱 위원		
22	제36호	김용갑	9. 14	불 능 기각(1) : 이운성 위원 불능(5) : 김준곤, 이석영, 백승헌, 박은정, 이원영 위원 인정(2) : 위원장, 안병욱 위원		
23	제24호	우종원	9. 14	불 능 불능(5) : 위원장, 김준곤, 안병욱, 이운성, 백승헌 위원 인정(3) : 이석영, 이원영, 박은정 위원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사망 의 의심이 있으나 조사권한이 부족하여 진상규명이 불가능 하다는 사유 기재키로 함
24	제43호	박상구	9. 14	기 각 전원 의견일치(8)		사인 부분에 있어 자살 여부 를 특정할 수 없으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문을 작성키로 함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박은 정, 이원영 위원)
25	제37호	박종근	9. 14	기 각 전원 의견일치(8)		사고사의 가능성 등 사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 문을 작성키로 함
26	제18호	박태순	9. 14	불 능 인정(2) : 이석영, 안병욱 위원 불능(6) : 위원장, 김준곤, 이운성, 백승헌, 박은정, 이원영 위원		
27	제28호	정범영	9. 14	인 정 불능(2) : 백승헌, 이운성 위원 인정(6)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이원영 위원		
28	제72호	임태남	9. 15	불 능 불능(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박은정, 백승헌, 안병욱, 이원영 위원 기각(1) : 이운성 위원		

결정문 미작성 현황

'02. 9. 16

연번	사건명		표결일자	표결결과	결정문작성	비고
	사건번호	사건명				
29	제73호	박태조	9.15	인정 인정(5) : 위원장, 김준배, 이석영, 박은정, 이원영 위원 불능(3) : 이운성, 백승헌, 안병욱 위원		
30	제45호	이승삼	9.15	불능 불능(6) : 위원장, 김준배, 백승헌, 이석영, 이원영, 박은정 위원 기각(2) : 이운성, 안병욱 위원		
31	제25호	김성수	9.15	불능 불능(7) : 위원장, 김준배, 백승헌, 이석영, 이원영, 박은정, 이운성 위원 인정(1) : 안병욱 위원		
32	제29호	김상원	9.15	기각 전원 의견일치(8)		
33	제32호	허원근	9.15	기각 전원 의견일치(8)		민주화운동 관련성 없는 군 의문사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군 의문사 수사를 전담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주문에 포함키로 함
34	제59호	안치웅	9.15	불능 각하(1) : 박은정 위원 불능(7) : 위원장, 김준근, 이석영, 안병욱, 이운성, 이원영, 백승헌 위원		위원 전원 찬성으로 노진수 타살 관련 제보에 따른 수사 의뢰기로 함
35	제60호	노진수	9.15	불능 각하(1) : 박은정 위원 불능(7) : 위원장, 김준근, 이석영, 안병욱, 이운성, 백승헌, 이원영 위원		위원 전원 찬성으로 노진수 타살 관련 제보에 따른 수사 의뢰기로 함
36	제4호	이이동	9.15	기각 불능(2) : 위원장, 이원영 위원 기각(6) : 김준근,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백승헌, 이운성 위원		
37	제56호	최석기	9.15	기각 인정(1) : 박은정 위원 기각(7) : 위원장, 김준근, 이석영, 안병욱, 백승헌, 이운성, 이원영 위원		소수의견 작성키로 함

결정문 미작성 현황

'02. 9. 16

연번	사건명		표결 일자	표 결 결 과	결정문 작성	비 고
	사건 번호	사건명				
38	제33호	문영수	9. 15	기 각 불능(1) : 이원영 기각(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백승현, 이윤성위원		
39	제57호	박용서	9. 15	기 각 인정(2) : 박은정, 이원영 위원 기각(6)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백승현, 이윤성 위원		소수의견 작성키로 함
40	제52호	손윤규	9. 15	기 각 인정(1) : 박은정 위원 기각(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백승현, 이윤성, 이원영 위원		소수의견 작성키로 함
41	제54호	변형만	9. 15	인 정 전원 의견일치(8)		
42	제58호	김용성	9. 15	인 정 전원 의견일치(8)		
43	제85호	전정배	9. 15	인 정 제척(1) : 백승현 위원 인정(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이원영, 이윤성위원		민사관계 수입
44	제72호	임태남	9. 15	불 능 기각(1) : 이윤성 위원 인정(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이원영, 백승현위원		
45	제42호	남현진	9. 16	불 능 기각(1) : 이윤성 위원 인정(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안병욱, 박은정, 이원영, 백승현위원		
46	제49호	한영현	9. 16	인 정 위원 전원 의결일치(8)		
47	제39호	이윤성	9. 16	인 정 위원 전원 의결일치(8)		

결정문 미작성 현황

'02. 9. 16

연번	사건명		표결 일자	표 결 결 과	결정문 작 성	비 고
	사건 번호	사건명				
48	제84호	장석구	9. 16	인 정 위원 전원 의결일치(8)		
49	제14호	장준하	9. 16	불 능 위원 전원 의결일치(8)		
50	제19호	이철규	9. 16	불 능 위원 전원 의결일치(8)		
51	제21호	박창수	9. 16	불 능 기각(1) : 이운성 위원 불능(7) : 위원장, 김준곤, 이석영, 박은정 이원영, 백승현 안병욱위원		
52	제20호	이내창	9. 16	불 능 인정(3) : 위원장, 김준곤, 이원영 위원 불능(5) : 이석영, 박은정, 이원영, 백승현 안병욱위원		
53	제 3호	신호수	9. 16	불 능 인정(2) : 이석영, 안병욱 위원 불능(6) : 위원장, 김준곤, 이운성, 박은정 이원영, 백승현위원		
54	제 6호	정경식	9. 16	불 능 위원 전원 의결일치(8)		
55	제62호	정성희	9. 16	인 정 불능(3) : 김준곤, 이운성, 백승현 위원 인정(5) : 위원장, 박은정, 이원영, 안병욱 이석영 위원		
56	제55호	최은순	9. 16	불 능 인정(1) : 안병욱 기각(2) : 이운성, 이원영 위원 불능(5) : 위원장, 김준곤, 박은정, 이석영 백승현위원		
57	제 5호	김두황	9. 16	불 능 인정(3) : 이석영, 박은정, 안병욱 위원 불능(5) : 위원장, 김준곤, 이운성, 이원영, 백승현위원		
58	제83호	이재문	9. 16	기 각 불능(3) : 김준곤, 안병욱, 박은정 위원 기각(5) : 위원장, 이운성, 이원영, 백승현, 이석영위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회신 결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국회의원 전원 에 대해 실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때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의견으로 간주한다고 공개질의서에 명시하였다.

회신한 의원 중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총 75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나라당31, 민주당43, 자민련1)

다음은 법 개정 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가나다 순)

강삼재(한), 강운태(민), 고흥길(한), 권오을(한), 권태망(한), 김경천(민), 김근태(민), 김덕룡(한), 김동욱(한), 김명섭(민), 김문수(한), 김방림(민), 김부겸(한), 김성조(한), 김성호(민), 김영춘(한), 김영환(민), 김옥두(민), 김원길(민), 김원웅(한), 김찬우(한), 김충조(민), 김홍신(한), 김희선(민), 남궁석(민), 문희상(민), 맹형규(한), 박명환(한), 박승국(한), 박인상(민), 박주천(한), 서상섭(한), 서청원(한), 송광호(자), 송영길(민), 신계륜(민), 신기남(민), 심재권(민), 안동선(민), 안상수(한), 안영근(한), 안택수(한), 오세훈(한), 원희룡(한), 유재건(민), 이경재(한), 이규택(한), 이미경(민), 이부영(한), 이상수(민), 이연숙(한), 이용삼(민), 이우재(한), 이윤수(민), 이정일(민), 이재정(민), 이종걸(민), 이창복(민), 이호웅(민), 임종석(민), 임채정(민), 전갑길(민), 정대철(민), 정동영(민), 정균환(민), 정범구(민), 정세균(민), 정의화(한), 조배숙(민), 조성준(민), 조정무(한), 천정배(민), 최영희(민), 추미애(민), 한화갑(민)

2002. 9. 1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